

##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예천군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2.5.23. ~ 2022.5.24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경상북도		

대지현황	대지위치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			
	지번 734	관련지번		
	대지면적 81,583.0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지구단위계획구역, 준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4,556.11㎡	건폐율 5.5846%	층수 지하 : 1층/ 지상 : 4층	
	주용도 교육연구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	2동
	최고높이 18.45m	용적률 12.86%	연면적 합계	13,079.88㎡

	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건축시공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구단위계획지침 상 “평면지붕 면적의 30%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옥상녹화로 조성” 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당 도면에는 별도의 녹지 및 휴게 공간이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.</li> <li>· 대지 남측 전면의 체육공간에서 구기종목 이용 시 도로 측에 면한 구간에는 공이 외부 도로 측으로 나가서 마주하는 차량과 직·간접적으로 사고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이를 차단 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이나 생울타리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.</li> </ul>
	구조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공 시 기초 저면레벨의 허용지내력이 가정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.</li> <li>· 지붕 처마 철골부재 제작 시 공장에서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관계기술자 협력자에게 확인받을 것.</li> <li>· 보를 두께가 얇은 벽체에 정착하는 것은 철근의 정착길이 확보 문제도 있고, 횡력작용 시 벽체 파손 등의 문제로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 됨. 일부 구조계획의 변경이 필요함.</li> </ul>
	토목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차장 조성 시 차량의 대형화, 이용자 편의,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전 구간에 대하여 확장형 주차구획을 고려함이 좋겠음.</li> </ul>
	설계·계획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같은 공간의 평면도임에도 불구하고 슬라브의 높이가 여러 높이로 표기되어 시공상 같은 층이라도 시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바, 이에 시공상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· 자전거보관소가 누리맞이광장 한 곳에만 설치되어있음. 생활관 등 필요 시설에 자전거보관소 추가 계획 바람.</li> <li>· 지하층의 주차장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, 임산부 주차구역은 홀에 인접하여 배치 바람.</li> </ul>

	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 건물 복편 대지 활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.</li> <li>· 지하주차장 진입동선이 길어서 차량접근이 불편하여 동선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.</li> </ul>
	경관·디자인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옥외광고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에 따라 주차동선에 따른 사인물과 내부사인물 디자인 아이덴티티 계획 제시 필요함.</li> <li>· 색채계획은 경북도청에 대한 상징색 및 경관색에 대한 구체적 제시 후 비교 제시 필요함.</li> </ul>
	소방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,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는지 확인</li> <li>·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를 대비해 전기차 충전소를 입구쪽으로 배치 검토.</li> <li>· 비상방송설비 3선식(업무용, 비상용, 공통) 검토 요망.</li> <li>· 탕비실(화기사용시)에 자동확산소화기구 배치 검토.</li> <li>· 건물 내 적절한 소화기 배치 요망.</li> </ul>
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 ] 원안 의결    [○]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
------	--